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정순기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순기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
-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(안 제7조, 제8조)
-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정지원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향후 지정 정신의료기관 역할과 기능, 소요예산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